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012-10



2026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26년 개정세법 해설

머리말

2026년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서민·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조세탈루 방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율 환원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등을 통해 조세탈루를 방지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2026년 개정세법 해설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1
☞ 국세기본법 / 4	
☞ 국세징수법 / 12	
2. 소득세법 / 17	
☞ 종합소득세 분야 / 17	
☞ 양도소득세 분야 / 45	
☞ 국제조세 분야 / 59	
3. 법인세법	73
☞ 법인세 분야 / 73	
☞ 국제조세 분야 / 95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7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43	
☞ 공익법인 분야 / 157	
6. 종합부동산세법	163
7. 부가가치세법	175



CONTENTS

8. 조세특례제한법 191

-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 191
- ☞ 국제조세 분야 / 199
- ☞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 203
-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분야 / 243
- ☞ 법인세 분야 / 263
-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337
- ☞ 부가가치세 분야 / 341
- ☞ 개별소비세·주세 분야 / 359

9. 기타세법 363

- ☞ 개별소비세법 / 365
- ☞ 주세법 / 367
- ☞ 증권거래세법 / 369
- ☞ 조세범처벌절차법 / 370
- ☞ 교육세법 / 371
- ☞ 농어촌특별세법 / 375



2026년 개정세법 해설

2026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0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4
0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5
0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	6
04.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7
05.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등	8
06.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9
07.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10
08.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11

국세징수법

0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12
0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13
0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14
0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15

주요 개정 내용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등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2호) : 2025.12.23.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5호) : 2026.2.27.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3호) : 2025.12.23.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6호) : 2026.2.27. 공포

국세기본법

0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 (원칙) 등기우편 ○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❶~❸의 납부고지서 ❶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❷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추 가〉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 (좌 동) ○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❶~❹의 납부고지서 } ❶~❸ (좌 동) ❹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대상 확대) 2026.1.1.부터 시행
- (기준세액 상향) 2026.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가. 개정취지

-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송달 신청 간주 ○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송달 불필요) ○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 (좌 동) ○ (대상) 고지세액 추가 - (좌 동)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하는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하는 세액

〈추 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부터 시행

0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

국세기본법 제21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❶+❷) ❶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❷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추 가〉	□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❶+❷+❸) ❶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❷ (좌 동) ❸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04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수정신고 요건) ❶ & ❷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 신고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한 경우 ○ (기한후신고 요건) ❶ & ❷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 신고 불이행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요건 명확화 ○ (좌 동) ❶ (좌 동)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 (좌 동) ❶ (좌 동)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05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등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인 등 □ 고충민원 정의 ○ ❶ or ❷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❶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❷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추 가〉 〈신 설〉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좌 동) ○ 고충민원 신청인 □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 (좌 동) ○ ❶~❸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❶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❷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 및 고발 ❸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 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07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table><tr><th>농업 등</th><th>제조업 등</th><th>부동산임대업 등</th></tr><tr><td>6억원</td><td>3억원</td><td>1.5억원</td></tr></table> ☐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 수입금액 기준 삭제 ☐ (좌 동)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8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지연통지) 통지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5일 이내 한차례 연장 가능하고, 해당 사유 등을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0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체납 정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 (확인범위) ❶~❷ ❶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❷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❹ ❶~❸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실태확인원 의무) 실태확인원·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0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 공매 ○ 수의계약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 금전의 배분 〈추 가〉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 (좌 동) ○ 가상자산 매각 - (수수료) 매각대금×수수료율*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0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가. 개정취지

- 체납 징수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단공개 제외 대상 ①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 / (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연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③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① 납부한 체납액 인정범위 확대 - $(B+C) / (A+B)$ ▪ (좌 동) ▪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②~④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0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가. 개정취지

- 체납 징수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추 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 ☐ (좌 동)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정보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문의사항



(044) 204-3117~21



차례 /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0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20
0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1
0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22
04.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23
05.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24
06.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25
07.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26
08.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7
0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28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29
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30
1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31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규정 보완	31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32
1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33
14.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34
15.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35
16.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36
17.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37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38
19.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39
2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40
2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41
22.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42
23.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43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 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 : 2026.2.27.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 : 2026.3.20. 공포

0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임업 종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 (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연 3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자녀 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자녀 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② 「국가공무원법」, 「사학연금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③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	☐ 대상 확대 ○ (좌 동)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한도 확대 ○ (좌 동) ○ 휴직일 ~ 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대상) 20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한도)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4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 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26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5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 보상금 과세 ○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 ○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	□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 받는 지원금·보상금은 사업소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 필요경비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 ○ (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미가입시) -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1대 초과분) 미인정 • ('24~'25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업무사용 비율금액 $\times \frac{\text{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text{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 〈신 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합리화 ○ (좌 동) ○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좌 동) - 단, '24~'25년의 경우 (50% + 가입 기간비율 $\times$ 50%)*로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 업무 사용비율 $\times \{50\% + \frac{\text{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text{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 \times 50\%$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7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자녀 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대상 확대 } ☐ (좌 동) - 소득요건 폐지 }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제81의11 부칙, 법률 19193호 법인세법 제75조의7 부칙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026.1.1. 이후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 2027.1.1. 이후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가. 개정취지

- 노후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 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 소득세액의 60% 〈신 설〉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 (좌 동) ○ 4% → 3%로 인하 □ 장기수령시 감면을 확대 ○ (좌 동)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 소득세액의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제도 도입 ☐ 사업소득세액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 개정취지

- 사업자 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단서 신설>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 ☐ (좌 동) - 단, 여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통지의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발급 ○ (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범위) 전자 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추 가〉	□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 ○ (좌 동)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

14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 (내용) 세액정산 방법 변경 - (∼'25.12.31) 전체 산출세액 - (종전에 계산된 이연세액 + 기납부세액) - ('26.1.1.∼) 전체 산출세액 - (재계산된 이연세액* + 기납부세액) * 전체 산출세액 중 전체 퇴직소득 대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재계산 ○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 적용대상 축소 및 시행일 연기 ○ (좌 동)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종전 방식(2025년 이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발생하는 경우*만 변경된 방식(2026년 이후 방식) 적용 * 전체 산출세액 < (종전에 계산된 이연세액 + 기납부세액)
○ (시행일) 2026.1.1.	○ 2026.7.1.로 연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출서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신 설〉	☐ 인정범위 완화 ☐ (좌 동) - 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대체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가축별 규모 - 젖소·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군 〈추 가〉	□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 (좌 동) - 개 5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세액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1명 : 12,500원 2명 : 29,160원 3명 이상 : 29,160원 + 2명 초과 1명 당 25,000원	☐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 1명 : 20,830원 2명 : 45,830원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등

가. 개정취지

- 소득 파악 제고 및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❶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의원, 약사업 등 ❷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 학원 등 ❸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❹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❺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❻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❶~❺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	☐ 의무발급대상 확대 (2개 업종 추가) ○ 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좌 동) ○ 그 외 기타 숙박업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집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 가>	☐ 자료집중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을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을 산정 $\left(\frac{10\%}{1-10\%} \approx 11\% \right)$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인 주주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2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분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추 가〉	□ 배당소득 범위 확대 } ○ (좌 동) ○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 (만기시 원금 보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3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63조

가. 개정취지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 구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광 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민 석

문의사항

(044) 204-3137~40



차례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01.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48
02.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49
0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50
04.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51
05.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52
0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53
07.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54
08.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55
09.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56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	57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 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878호) : 2025.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 : 2026.2.27. 공포

01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가. 개정취지

-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 ○ (배율*) 토지의 소재지·용도지역별 상이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 - 도시지역 내 토지 : ① 또는 ② ①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② 수도권 내 녹지 및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기준일) 양도일 〈단서 신설〉	☐ 예외 신설 ○ (좌 동) ○ 토지수용 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 -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농·어업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귀농주택 범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 ①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② 대지면적 660㎡ 이내 ③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④ 농지소유자(1,000㎡ 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u>어업인*</u>이 취득한 주택 * 「수산업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양식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 범위 합리화 ○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 추가 - (좌 동) - <u>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u>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양도·취득시기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록·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등기접수일 〈신 설〉	☐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신설 ○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 기존 토지 취득 시기와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04 이종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추 가〉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좌 동)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① 양도자가 주주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② 양도자가 주주등, 임직원, 법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추 가>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좌 동)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 *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가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 시 활용 ○ $\frac{\text{공제금액}}{\text{가업상속 재산가액}}$ 〈추 가〉 ※ 가업상속공제 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 = ① + ② ① :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 상속인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계산방법 보완 ① 개인가업의 경우 : (현행과 같음) ② 법인가업의 경우 : $\frac{\text{가업용 자산}}{\text{총 자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후 과세 ○ (평가방법) 평가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 -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포함 ○ (평가기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매매·공매등 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평가 시 모두 적용) 〈신 설〉 〈참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기간 <table border="1"> <tr> <th>상 속</th><th>증 여</th></tr> <tr> <td>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td><td>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td></tr> </table> 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내 신고일까지	상 속	증 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명확화 ○ (좌 동) ○ 매매·공매 등 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현행 동일)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 예정신고일 까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상 속	증 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08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도 제외 ○ 동거봉양, 혼인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 <u>6억원 이하</u> 〈추 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 (좌 등) - <u>7억원 이하</u> ○ 20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주택 수에서도 제외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는 9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6.2.27.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2026.2.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가. 개정취지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 제외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024.1.10. ~ 2025.12.31. 기간 중 취득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 → 2026.12.31.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 자료 및 주기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제출주기) 분기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 (요청시)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 제출 자료 및 주기 추가 ☐ (좌 동) ☐ (좌 동)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 (좌 동) ②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62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62
②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	63
③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64
④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66
0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67
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67
②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	68
③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69
03. 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70
04.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71
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	72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 (국제조세분야)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 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 : 2026.2.27. 공포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추 가>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퇴직소득금액
☐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배당소득 <추 가>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②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C : 종합소득금액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공제 적용 방식 변경 ○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③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제57조의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및 공제한도 삭제
-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 ①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한계세율 - ②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 1 - 한계세율	□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 ※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A \times B) + (C \times D) + (E \times F)$ * A :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B : 배당소득 조정계수 C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D : 이자소득 조정계수 E :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F : 연금소득 조정계수

종 전	개 정																													
종 전	<table><tr><th>기준소득*</th><th>B</th><th>D</th><th>F</th></tr><tr><td>1,400만원 이하</td><td>1</td><td>1</td><td rowspan="9">0.89</td></tr><tr><td>5천만원 이하</td><td>0.99</td><td>0.89</td></tr><tr><td>8,800만원 이하</td><td>0.88</td><td>0.73</td></tr><tr><td>1억 5천만원 이하</td><td>0.76</td><td>0.53</td></tr><tr><td>3억원 이하</td><td>0.72</td><td>0.48</td></tr><tr><td>5억원 이하</td><td>0.70</td><td>0.44</td></tr><tr><td>10억원 이하</td><td>0.67</td><td>0.40</td></tr><tr><td>10억원 초과</td><td>0.64</td><td>0.35</td></tr></table>	기준소득*	B	D	F	1,400만원 이하	1	1	0.89	5천만원 이하	0.99	0.89	8,800만원 이하	0.88	0.73	1억 5천만원 이하	0.76	0.53	3억원 이하	0.72	0.48	5억원 이하	0.70	0.44	10억원 이하	0.67	0.40	10억원 초과	0.64	0.35
	기준소득*	B	D	F																										
	1,400만원 이하	1	1	0.89																										
	5천만원 이하	0.99	0.89																											
	8,800만원 이하	0.88	0.73																											
	1억 5천만원 이하	0.76	0.53																											
	3억원 이하	0.72	0.48																											
	5억원 이하	0.70	0.44																											
	10억원 이하	0.67	0.40																											
	10억원 초과	0.64	0.35																											
* 종합소득과세표준, 연금소득 등 고려한 소득																														
○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④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적립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해당 소득 × 세율'의 금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8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요건) 국외전출자(❶ + ❷) ❶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❷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추 가〉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좌 동)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 (좌 동) - 국외주식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②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범위 구체화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제118조의9 등)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외전출세 적용 제외 국외주식등 범위 ○ (적용제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 ②·③의 요건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 한정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②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 ③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시작일 이전에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③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평가방법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등의 양도가액 평가 방법 ○ (국내상장주식등) 기준시가 ○ (국내비상장주식등)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추 가〉	□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방법 추가 ○ (좌 동) ○ (국외주식등) - 상장주식 :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 :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방법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03

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가. 개정취지

-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5년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신 설〉	○ (좌 동)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04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가. 개정취지

-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리인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 ○ 자산을 상시적으로 보관 및 관례적으로 배달하는 자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 국제기준 반영 ○ (좌 동)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 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가. 개정취지

-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서 ☐ 비과세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 제출 서류 합리화 ☐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경정청구서 ☐ (좌 동) ☐ 거주자증명서 또는 그 밖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026년 개정세법 해설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전준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현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성범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 례 /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0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76
0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77
03.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78
04.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79
05.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80
06.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81
07.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82
08.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83
09.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84
10.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85
11.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86
12.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87
13. 법인세율 환원	88
14.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89
①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신설	89
②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 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90
15.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91
16. 연결납세 제도 보완	92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92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93
17.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94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 법인세율 환원
-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7호) : 2025.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0호) : 2026.2.27.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 2026.3.20. 공포

0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 ○ (좌 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추 가〉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 (좌 동)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03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 $\text{취득가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총채굴예정량}}$	□ 취득가액·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 (좌 동)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 $\text{미상각잔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잔여채굴예정량}^{**}}$ * 기존 취득가액-누적상각액+증가한 취득가액 **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4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특례기부금)소득금액 × 50% ○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 (좌 동) ○ (좌 동) - 20% →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 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 ○ (좌 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6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 외국 종교단체 제외 ☐ (좌 동) -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7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 제39조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 (의무내용) 지정요건 및 의무 이행여부 보고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보고대상) ■ (한국학교 등*) 소관부처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등 ■ (공익법인) 국세청 ☐ (위반시 제재) 미보고시 지정취소	☐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폐지 〈삭 제〉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8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상품·제품 등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 되는 경우 : 그 기간 만료일	□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 판매한 경우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09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유가증권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주식등,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 시가법 ○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단서 신설〉	☐ 평가방법 보완 ○ (좌 동) ■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 총평균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추 가〉 ☐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 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좌 동)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좌 동)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사업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 ○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는 용역 제공 〈추 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 } ○ (좌 동)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저가 임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일반법인) <table>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r> <td>0~2억원</td><td>9%</td></tr> <tr> <td>2~200억원</td><td>19%</td></tr> <tr> <td>200~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 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table>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r> <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 <td>200~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좌 동) <table>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r> <td>0~2억원</td><td>10%</td></tr> <tr> <td>2~200억원</td><td>20%</td></tr> <tr> <td>200~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좌 동) <table> <tr> <th>과 표</th><th>세 율</th></tr> <tr> <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①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배제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추 가〉	☐ 추가과세 배제 주택 추가 ☐ (좌 동) ☐ CR리츠가 2025.1.1.~2025.12.31.중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분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②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
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취득분	☐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2026.12.31. 취득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적용시기) 2026.2.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26.2.27.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5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수시부과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시부과결정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등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하되 아래 가산세는 적용 제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 }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 제76조의21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가산세 항목 추가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 제76조의12 제2항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단서 신설> ☐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단서 신설>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 〈추 가〉 ○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 (좌 동)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98
①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98
②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100
0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101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102
0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103
05.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104
0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105

※ 국제조세분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통 개정사항

차례 /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03. 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70
04.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71
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	72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세법 (국제조세분야)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7호) : 2025.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0호) : 2026.2.27. 공포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5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추 가〉 □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식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㉔)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 (좌 동)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 A : 산출세액 -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 과세표준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좌 동) - (좌 동) -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②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제57조의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변경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 ①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한계세율}$ - ②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 1 - 한계세율	□ 공제금액 변경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국내 자산·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 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 가상자산소득	□ 증여의 범위 명확화 ○ (좌 동)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❶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 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❷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추 가〉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 ○ (좌 동)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 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 미제출·거짓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은 시정명령 하고, 명령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05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 (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예탁자 〈추 가〉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 (좌 동) ○ (좌 동) ○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 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28.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 ○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 ○ (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 자본금 추산액* < 0 *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 ①, ② 중 선택 ①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 ②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기자본금/위험가중자산) ○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 - 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 이자가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금융업 6배)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신 설〉	□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 세제 적용 배제 ○ (좌 동) ○ (좌 동)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 세제 미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 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110
0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111
03. 글로벌최저한세	112
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112
②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113
③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114
④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115
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116
⑥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117
⑦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	118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	119
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120
⑩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121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23
⑫ 적용면제 특례	124
⑬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125
⑭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126
⑮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127
⑯ 수시부과의 사유 등	128
⑰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129
⑱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130
⑲ 대상조세 배분범위 확대	131
⑳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133
㉑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134
㉒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	135
㉓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136
㉔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137
㉕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138
㉖ 적용면제 기한 하위법령 위임	139
㉗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140
㉘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	141

주요 개정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5호) : 2025.12.23.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8호) : 2026.2.27. 공포

0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추 가〉 ○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0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추 가〉	☐ 발급 대상 추가 ☐ (좌 동)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 세율 적용 ☐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 조세목적상 거주자·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세조세조정법 제63조, 제84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 소득산업규칙·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업규칙·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 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 (분납) 2천만원 초과 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 (좌 동)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②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6, 제73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의 계산 및 과세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 과세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에 대해 내국추가세액 계산 후, 각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추가세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조정대상조세, 실효세율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준용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❶ 또는 ❷ 중 택1) ❶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❷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③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5제5항, 제73조의6 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④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 제125조의4, 제125조의5, 제125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상세 규정 ○ 대상조세의 범위 및 조정사항, 구성기업 간 배분(§109~§111)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등 (§112·§113·§113의2·§113의3)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간주 ○ 경정 등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 조세 감액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방법(§114)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규모의 기준(§115)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방법(§116)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발생 시 조정방법 규정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 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116의2)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처리방법 (§119)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계산방법 적용 ○ 관련 규정 준용 ○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 제2항,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 ○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 ○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❶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❷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 조세에 포함 가능 ❸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 ☐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 허용 ○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 조세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⑥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 신설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 ○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⑦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8 신설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투자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산 $\text{내국추가세액배분액} = A \times B \div C$ A :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①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 각 구성기업의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②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 : 각 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 *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최저한세율(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소적용제외 특례 ☐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 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7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①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 구성 기업 ②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⑩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 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 ○ 최소적용제외 특례* (§126) * 해당 소재지국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 평균이 각각 1천만,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 0으로 간주 →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적용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특례* (§131) * 둘 이상의 기업그룹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다국적기업그룹 →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 투자구성기업의 별도계산* 및 과세분배 방식** 특례 (§135, §137) * 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을 주주구성기업으로 분배 시, 주주구성기업이 15% 이상 과세가 예상되면 해당 분배금은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으로 귀속	□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 ○ (좌 동)

종 전	개 정
○ 적용면제 특례* 배제사유(§138) * 소액, 간이 실효세율, 초과이익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에 한하여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 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별도 계산*, ❷투시과세처리**, ❸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⑫ 적용면제 특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면제 ①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 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②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⑬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 연도에 대한 특례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 산정 시 재무제표 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 * 이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은 최초적용연도 반영 금액을 기초로 계산 ** 법 §67②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없이 인정하여, 이전연도 발생분에 대한 계산 부담 최소화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⑭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액 신고를 위한 서류 규정 ○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배분방식별 추가 서류 제출(❶ 또는 ❷) ❶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❷ (지정배분)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방법 규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⑮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수시부과·통지·징수 ○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⑩ 수시부과의 사유 등

국세조세조정법 제143조

가. 개정취지

-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당국 결정·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기업에 통지할 경우 ☐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 첨부 ※ 단,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을 통지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결정·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⑰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7.5억 유로) 판단기준 ①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 매출액 합계 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 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① (좌 동) 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 (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03

글로벌최저한세

⑱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조세 배분 ○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 배분대상 대상조세 ①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②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 범위 확대 ○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 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⑬ 대상조세 배분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① 본점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 고정사업장에 배분 ②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적격지분보유자 귀속분 :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 ③ 주주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혼성기업 귀속분 : 혼성기업에 배분 ④ 적격지분보유자에 소유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역혼성기업 귀속분 : 역혼성기업에 배분 ⑤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 피지배외국 법인에 배분 ⑥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배당수익 관련 대상조세 : 배당지급 구성기업에 배분	□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비구성기업)에도 대상조세 배분 ○ 소득의 원천이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로 ① ~ 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배분 *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 소득의 원천이 비구성기업으로 ⑦, 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비구성기업에 배분 *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종 전	개 정
⑦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통합형피지배 외국법인 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 '25.12.31. 이전 개시한 회계연도까지 적용 ⑧ 특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납부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대상조세 :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제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⑳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성기업의 정의 : ❶·❷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❶ 설립지국에서 과세 〈추 가〉 ❷ 지분보유자 소재지국은 기업의 소득·이익을 지분보유자에 귀속시켜 과세	☐ 정의 명확화 ❶ (좌 동) - 설립지국에 법인세제가 없는 경우, 국조령 §108②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 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예) 설립지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❷ (좌 동)

03

글로벌최저한세

②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세액(대상조세) 배분은 한시적 운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주주가 소유한 전 세계 피지배 외국 법인의 실효세율이 기준세율 미달 시, 차액분을 주주 소재지국에서 과세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주주 소재지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피지배외국법인(구성기업)에 배분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의 세액으로 반영 〈신 설〉	☐ 적용기한 보완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이전 개시, '27.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03

글로벌최저한세

②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3항·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방식 규정 ○ (배분대상)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 단,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는 제외 ○ (배분방법) ❶ 또는 ❷ 중 선택(5년 선택) ❶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 대상조세 배분액 및 배분한도 산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❷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서 대상조세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글로벌최저한세

㉓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 등으로 증가한 이전사업연도의 추가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로서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에서 조정대상 조세를 차감한 값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 ①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0 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 용어 명확화 ○ (좌 동) ○ (좌 동)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값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에 15%를 곱한 금액 ①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0 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합계 예상액

03

글로벌최저한세

②④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내구성 기업간 배분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법정배분방법 *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 가능 (법 §73⑤) ○ 국내구성기업별 배분비율 $= \left(\frac{①}{②} \times \frac{50}{100} \right) + \left(\frac{③}{④} \times \frac{50}{100} \right)$ ①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 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 단,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 모기업인 경우 1로 간주 ②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 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③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액 평균액 ④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액 평균액	□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배분비율 명확화 ○ (좌 동) ②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구분 - (국내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 - (해외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 ○ (좌 동)

03

글로벌최저한세

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서 ❶~❸ 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❶ 귀속소득에 대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를 이상으로 과세되는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 ❷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 ❸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 용어 명확화 ❶ (좌 동) ❷ (좌 동) ❸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며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03

글로벌최저한세

㉔ 적용면제 기한 하위법령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 신속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기 적용면제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시행령 위임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시행령 위임

03

글로벌최저한세

②7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제1항·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2026.1.5.)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환기 적용면제 ○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 세율이 일정률 이상 <table> <tr> <th>사업연도</th><th>간이 실효세율</th></tr> <tr> <td>2024년</td><td>15%</td></tr> <tr> <td>2025년</td><td>16%</td></tr> <tr> <td>2026년</td><td>17%</td></tr> </table> 〈추 가〉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신 설〉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 ○ (요건) '27년 추가 <table> <tr> <th>사업연도</th><th>간이 실효세율</th></tr> <tr> <td>2024년</td><td rowspan="3">좌 동</td></tr> <tr> <td>2025년</td></tr> <tr> <td>2026년</td></tr> <tr> <td>2027년</td><td>17%</td></tr> </table> ○ (기한) '27.12.31. 이전 개시, '29.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1년 연장) □ 적용기한 규정 ○ (기한)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03

글로벌최저한세

㉘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계산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 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 ○ 회계상 인식기준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산입 ○ ❶·❷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산입 제외 ❶ 20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대상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명확화 ○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무 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산입 ○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❶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i) 정부조치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ii) 법인세제의 신규 도입 - 회계·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도 포함 - 법인세제 최초 시행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

〈추 가〉

종 전	개 정
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 자산 〈추 가〉 〈신 설〉	② 이연법인세자산 범위 확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세무상 비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 포함 * (예)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함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 산업 제외의 예외 -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까지 산업 가능 *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주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혜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 재 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효 동

문의사항

(044) 204-3142~5





차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 범위 명확화	146
02.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147
0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148
04.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149
05.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150
0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	151
0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152
0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153
0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	154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	155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보완	156

주요 개정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 범위 명확화
-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보완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9호) : 2025.12.23.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1호) : 2026.2.27. 공포

0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 범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❶ 친족(「국기령」 §1의2①) 및 사돈 ❷ 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❸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현직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년 ❹ 본인 및 ❶~❸까지의 자가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등 ❺ 본인 및 ❶~❹의 자가 주식등을 30% 이상 보유한 법인 등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범위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퇴직임원 범위 명확화 - 현직 임원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사외이사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년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2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 가>	☐ 납부의무자 추가 ① (좌 동) ② ① 의 배우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3조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추 가〉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 대상 포함 〈추 가〉	☐ 제외 대상 추가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 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제외 대상 추가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 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과세 대상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4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공제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요건 ○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 개시 직전 일정기간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제외기간)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추 가〉	□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좌 동)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 * 도·소매업 : 3억, 제조업 1.5억 등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5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계산방식 합리화 ☐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받는 배당 ** 증여이익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 ① 증여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 실제 소득세액 〈추 가〉 ② ① 외의 경우 : 초과배당금액 × 14~45% * 추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	□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 ① (좌 동)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증여세 신고기한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실제 소득세액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0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수증자 -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산취득 또는 재산가치 상승 ○ 재산취득 사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내부정보 및 관련재산 취득, 증여·차입받은 자금으로 취득 ○ 재산가치 증가사유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 사업의 인허가 -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추 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 (좌 동) ○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포함 여부 합리화 - (좌 동) - 코넥스시장 상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코스닥, 코스피 상장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주식등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0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추가 ☐ (좌 동) ☐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좌 동)
〈추 가〉	- 공급망안정화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0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감정가액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자산 : 상장주식 ○ 상장주식의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가상자산의 경우 : - (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 (그 외) 거래소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公示된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평가 배제 ○ (좌 동) - 상장주식 및 가상자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국세청) 다음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소속 공무원 3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9명 이내의 사람 ○ (지방국세청) 다음중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소속 공무원 2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3명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 지방국세청 위원수 확대 ○ (좌 동) ○ 민간위원 확대 - (좌 동) - 8명 이내 - (좌 동)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 ① 일반적인 경우 : $\max(\textcircled{a}, \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80\%)$ * $\textcircled{a}$: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3 : 2 비율로 가중평균 〈단서 신설〉 ②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 $\max(\textcircled{b}, \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80\%)$ * $\textcircled{b}$: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2 : 3 비율로 가중평균 〈단서 신설〉 ③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 등* : 순자산가치 * 1. 청산절차진행 중 or 사업자 사망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가액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5.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 평가방법 보완 ① (좌 동) -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 $\max(\textcircled{a}, \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100\%)$ ② (좌 동)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 $\max(\textcircled{b}, \text{주당 순자산가치의 } 100\%)$ ③ (좌 동) * 1. (좌 동) 2. (좌 동) 3. 〈삭 제〉 4. 〈삭 제〉 5.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전준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현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성범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분야)

0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159
0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	160
03.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161
04.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162

0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0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다. 경과조치

- 2026.2.27. 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03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추 가>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 (좌 동)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4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등 임직원 고용제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 임직원이 되는 경우 ○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 (예외)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추 가〉	□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 ○ (좌 동) ○ 예외대상 추가 - (좌 동)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가산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 구 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광 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민 석

문의사항

(044) 204-3137~40





차례 / 종합부동산세법

0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166
0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167
03.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168
04.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169
05.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170
06.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171
0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172
08.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173
09.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174

주요 개정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4호) : 2025.12.23.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2호) : 2026.2.27. 공포

0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 (좌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 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 신탁재산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3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 (좌 동)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4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다음의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 사용자와 친족관계인 자 - 법인의 과점주주	☐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 (좌 동) -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미만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5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체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 다음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 합산배제 적용범위 명확화 ○ (좌 동) ○ 다음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소유한 미분양주택을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6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채무상환·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적용대상) 2024.3.28. ~ 2025.12.31. 취득분	○ ~ 2026.12.31. 취득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2026.1.1.부터 2026.2.27.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2월 27일 전”으로 본다.

0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 소형신축주택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 <u>6억원 이하</u> 〈추 가〉	□ 준공 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 (좌 동) - <u>7억원 이하</u> ○ 20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6.2.27.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2026.2.27.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08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가능 ❶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지분율이 높은 자 ❷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 :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9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주택 ☐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추 가〉	☐ 추징대상 주택 추가 ☐ (좌 동) ☐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부가가치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문의사항

(044) 204-3117~21



차례 / 부가가치세법

0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178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178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179
0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180
03.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81
04.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182
05.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183
06.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사업자 추가	184
07.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 기한 연장	185
08.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186
09.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187
10.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188
11.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189

주요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218호) : 2025.12.23.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3호) : 2026.2.27.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52호) :
2025.12.30.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재정경제부령 제9호) : 2026.3.20. 공포

0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예외 대상 확대 ○ (좌 동)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0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추 가>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 (좌 동)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 ❶ 국내 → 국외, ❷ 국외 → 국내, ❸ 국외 → 국외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 (좌 동) ○ <u>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u>

03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가. 개정취지

- 가공식품 물가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적용기한) 2025.12.31.	☐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7.12.31.

04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가. 개정취지

○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대상)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종료

05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특례 명확화 } ☐ (좌 동)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 (좌 동)

06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사업자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추 가〉 ○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특례 대상 추가 ○ (좌 동)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8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가. 개정취지

- 과세기반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좌 동) ○ 미디어 콘텐츠 창작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대상) ①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비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세율)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가산세율 상향 } ☐ (좌 동) ☐ (세율) 3 → 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 (대상자) 납세의무자 ○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추 가〉	□ 자료제출 범위 확대 ○ (좌 동)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❶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❷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❸ 근로계약서 사본 ❹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❺ 생활 서비스(택배 등) 이용내역 ❻ 그 밖에 ❶ ~ ❺와 유사한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11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①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② ①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추 가〉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좌 동) ③ ①~②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01.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193
0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194
0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195
04.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에 대한 의견서 내용 구체화 등	196
05.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198

01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 (요건) ❶ & ❷ ❶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❷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

가. 개정취지

-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①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② 2024.12.31.이전 폐업 및 2027.12.31.까지 재기 - 재기 : (i) 또는 (ii) 충족 (i) 1개월 이상 사업 (ii) 3개월 이상 근무 ③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2028.12.31.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2025.12.31.이전 폐업 및 2028.12.31.까지 재기 - 재기요건 추가 (i)·(ii) (좌 동) (iii)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③ 5천만원 → 8천만원 ○ 2029.12.31.

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3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

가. 개정취지

- 생계형 채납자 경제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중 소멸시효 미완성 금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일 것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 기간) 2026. 1. 1. ~ 2028. 12. 31. *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신청 가능 ○ (결정)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소명기간·재산평가기간 제외) 결정·통지 ○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에 대한 의견서 내용 구체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작성대상 조세특례) ① 일몰기한 도래 ② 시행 후 2년 미도과 ③ 기존 조세특례 범위 확대 ○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추 가〉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위한 법적근거 신설 ○ (좌 동)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①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정책목적에 대한 분석

종 전	개 정
〈추 가〉	❷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❸ 예상 감면액,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 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추 가〉	○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❶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소 보완대책 자료제출 ❷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❸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5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 (작성자) 재정경제부장관 ○ (결산서 작성내용) 직전연도 감면규모 전망·실적 간 비교 분석 등 ○ (결산서 제출)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세 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

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문의사항

(044) 204-3112~4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0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201
---------------------------------	-----

0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가. 개정취지

-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추 가〉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 (좌 동) ○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 (투자방법) ❶ 또는 ❷ ❶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❷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문의사항

(044) 204-3117~21



차 례

01.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6
0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7
0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208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8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209
04.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210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210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211
05.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2
06.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 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213
07.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214
08.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215
09.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16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218
11.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9
1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220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220
②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222
③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추가	223
13.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24
14.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225
15.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26
1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27
1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28
18.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29
19.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230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230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232

20.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233
21.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	234
2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235
23.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및 추징 요건 완화	236
24.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237
2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38
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238
②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239
③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240
④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	241
⑤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	242

01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기부·공제한도) 2천만원	□ 세액공제율 상향 ○ (좌 동)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 30%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영악화 판단기준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경영악화 요건 완화 ☐ 20% 이상 감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04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① (좌 동)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i)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ii)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한도 계산 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 ① + ②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가. 개정취지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① 기본공제대상 자녀등*이 3인 이상 : 주택 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② ①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5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06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 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하지 않은 경우 :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60% 범위 내에서 국세청 위임 ※ 기준시가의 55% 적용하되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국세청 고시)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한 간주전세금* ※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미고려 〈단서 신설〉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 (좌 동) -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위임*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가. 개정취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 제한 기준금액 ☐ 연 185만원	☐ 압류 제한 기준금액 상향 ☐ 연 2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08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부칙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026.1.1. ~ 2027.12.31.	☐ 적용기간 유예 } ☐ (좌 동) ☐ 2027.1.1. ~ 2028.12.31.

09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자녀 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r> <td>③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td><td>30%</td></tr> </table> *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및 재혼자의 자녀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	자녀 1명			350	275
	대중교통				자녀 2명 이상			400	300
	문화체육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적용기간) 2025.12.31.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 ☐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 〈추 가〉	☐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 취득과정 수업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 (요건) ❶ 5천원 미만 거래, ❷ 전화망을 통한 발급 ○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1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의2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적용기한) 2028.12.31.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좌 동)

종 전	개 정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②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제117조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14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신탁) 소득 공제 ☐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 ☐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 가능 ☐ (공제한도) ❶, ❷, ❸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❶ 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이내 ❷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연간 2,500만원) ❸ 공제가능 투자액 : 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원 이내	☐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 (좌 동) ☐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 (좌 동) ❸ 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원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1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028.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028.12.31.

1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적용기한) 2025.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2028.12.31.

18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납입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좌 동)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9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3조의3

가. 개정취지

-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대상자)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 (좌 동)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가입일 출자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종 전	개 정								
	②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table><tr><th>가입일 출자일</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tr><th>감면 내용</th><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가입일 출자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출자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가. 개정취지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추 가〉 ☐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소득을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 (좌 동)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 ☐ (좌 동)

20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제8항

가. 개정취지

- 환매 의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비과세 대상 -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 ○ 비과세 요건 - (투자대상)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할 것 - (가입기간) 2016.1.1.~2017.12.31. - (납입한도) 인별 3천만원 - (세제혜택 기간) 가입 후 10년간 - (의무환매 기간) 집합투자증권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신 설〉	□ 비과세 요건 완화 ○ (좌 동) - 예외사유 신설 ■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시* 미환매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56(1)나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1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가. 개정취지

- ISA 지원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예금·적금·예탁금 ○ 파생결합증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 (좌 동)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역외펀드) 제외

2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5.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23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및 추징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8

가. 개정취지

-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및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❶ & ❷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❶ 19세 이상 34세 이하 ❷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추징)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추징 예외)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추 가〉	□ 적용기한 종료 및 추징 요건 완화 ○ (좌 등)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요건 (❶&❷)을 갖춰 해지 ❶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후 다음 달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❷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등)

24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 신설

가. 개정취지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 (가입요건) ❶ & ❷ 충족 ❶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공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 ❷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계좌 요건) 계약기간이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600만원 ○ (의무가입기간) 3년 ○ (특별중도해지사유) ❶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❷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 ○ (적용기한) 2028.12.31.까지 가입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②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당소득의 범위) 현금배당(주식배당 등 제외) ☐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 포함 * (대차주식)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③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인 ☐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④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당성향 산정방법 ○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 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의 경우 ○ (원칙)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 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 ○ (예외)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 기준연도 적용요건의 예외 ○ 20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⑤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7항·제8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의 분리과세 신청 절차 ○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및 신청 ☐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정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구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광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민석

문의사항

(044) 204-3137~40



차 례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분야)

01.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245
0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46
0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47
04.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248
05.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가액기준 상향	249
06.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250
07.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51
08.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52
0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253
10.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254
11.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철거 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255
1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256
13.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	257
14.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258
1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259
16.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260
17.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	261
18.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	262

01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전액 감면 ○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 (좌 동) ○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 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가. 개정취지

-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0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가. 개정취지

- 어업인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4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농지대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4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하면서 다음의 기간 내 대토 - 종전 농지 先 양도한 경우 ■ 양도 후 1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 후 2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신규 농지 先 매수한 경우 ■ 취득 후 1년 내 기존 농지 양도 〈신 설〉	□ 요건 완화 ○ 신규 농지 매수 후 기존 농지 양도기한 연장 ○ (좌 동) ■ 공익사업 수용 시 취득 후 2년 내 기존 농지 수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5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가액기준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가. 개정취지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 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 (주택가액)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적용기간) 2024.1.4.~2026.12.31. 취득분	□ 지원대상 확대 ○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 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제외한 비수도권 - (좌 동) ○ 비수도권 가액기준 -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 -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택소재지) 20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주택가액) 2025.8.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06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토보상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협의매수·수용 등)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감면세액(대토보상과 채권보상 감면세액의 차액) 또는 이연받은 금액 상당 세액 납부 ❶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❷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전매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함) ❸ 대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 상속·증여한 경우 ❹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단서 신설〉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사후관리 배제 ○ (좌 등) - 단,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7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가. 개정취지

-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요건 및 지원내용)		○ (좌 동)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0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우대*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 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 ○ (대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구체적 계산방식 규정 없음)	□ 임대기간 양도차익 계산방법 추가 ○ (좌 동)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계산방법* 준용 * 양도 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text{임대 개시일 기준시가}}{\text{양도 시 기준시가} - \text{취득 시 기준시가}} \right)$

10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9 신설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회사 ○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이연세액 납부 - (일부 납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 처분 비율만큼 납부(익금산입) - (전부 납부)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 또는 전부 처분, 리츠의 해산인 경우 등 전부 납부 ○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된 세액 × 일수** × 22/100,000 * 리츠 공모 전 주식 처분,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철거 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및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 ○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한 토지 ○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계산) -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 ■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신 설〉	□ 양도가액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 안분계산 방법 보완 *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 준용 - (좌 동) ■ 토지·건물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예외) 구분가액 -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 ② 함께 취득 후 건물은 철거,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비수도권 소재 - 시행령으로 정하는 면적·가액 기준*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024.1.10.~2025.12.31. 중 취득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5.12.31. → 2026.12.31.

13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제1항

가. 개정취지

-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취득가액 기준 상향 ○ (좌 동) - 7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등) ①기회발전특구, ②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③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접한 동에 있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025.12.31.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 아닐 것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4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단서 신설〉	□ 사후관리 예외 신설 ○ (좌 동)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 ❶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❷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❸ 그 외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6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매매거래 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시장조성자 ○ (시장조성자)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추 가〉 ○ (유동성 평가기간) 시장조성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 간 〈추 가〉 ○ (시장조성계약 통보)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통보 〈추 가〉	□ 시장조성자 기준 등 추가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조성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매매 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매매 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 통보

18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 시장조성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 (제외 대상) ❶ 또는 ❷ ❶ 파생상품 총 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비중 5% 이상 ❷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 300조원 (선물)·9조원(옵션) 이상 〈신 설〉	□ 제외 대상 세부기준 신설 ○ (좌 동) ○ (거래대금·비중 산정) - 정규 거래시간 내 대금으로 한정 - 시장조성자가 거래한 대금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전준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현석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성범

문의사항



(044) 204-3127~31



차례

0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266
02.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267
03.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268
0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69
05.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0
06.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271
07.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72
0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273
09.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274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276
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77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278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	278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합리화	279
13.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0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281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282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283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283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285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	286
④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287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288
1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89
18.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291
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2
2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	293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94
22.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295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296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297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297

(법인세 분야)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298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정규정 신설	300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	301
26.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02
27.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303
28.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305
29.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307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309
31.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11
3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12
33.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313
34.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315
35.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316
36.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	317
37.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318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18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319
3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20
39.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321
4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2
4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3
4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24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325
44.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	326
4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327
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327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기금 출연금 추가	329
46.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30
4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332
4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33
49.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34
50.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35

0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제·감면 적용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02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 기준금액 상향 ☐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가. 개정취지

- 제도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요건 ○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추 가〉	□ 요건 추가 ○ (좌 동) ○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5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3단계 구조 <table> <tr> <th>지급기일</th><th>공 제 율</th></tr> <tr> <td>15일 이내 지급</td><td>0.5%</td></tr> <tr> <td>16~30일 지급</td><td>0.3%</td></tr> <tr> <td>31~60일 지급</td><td>0.15%</td></tr> </table> ○ (적용기한) 2025.12.3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06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제7항, 별표6

가. 개정취지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①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② 재료비 ③ 인건비 ④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⑤ R&D용 시설 임차료 ⑥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⑦ 디자인 개발지도비 ⑧ 특허 조사·분석비 ⑨ 클라우드 이용료 〈추 가〉	☐ 클라우드 이용료 적용범위 명확화 및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포함 ○ (좌 동) ⑨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⑩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연구개발 전담 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AI 학습용데이터)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07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table border="1"> <thead> <tr> <th>특구명</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위기지역</td><td>5년 100%+2년 50%</td></tr> <tr> <td>농공단지</td><td>5년 50%</td></tr> <tr> <td>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td></td></tr> <tr> <td>연구개발특구</td><td></td></tr> <tr> <td>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td><td></td></tr> <tr> <td>제주투자진흥지구</td><td></td></tr> <tr> <td>기업도시개발구역</td><td></td></tr> <tr> <td>지역개발사업구역</td><td></td></tr> <tr> <td>여수해양박람회특구</td><td>3년 100%+2년 50%</td></tr> <tr> <td>새만금투자진흥지구</td><td>(사업시행자는</td></tr> <tr> <td>평화경제특별구역</td><td>3년 50%+2년 25%)</td></tr> <tr> <td>아시아문화중심도시</td><td></td></tr> <tr> <td>금융중심지</td><td></td></tr> <tr> <td>첨단의료복합단지</td><td></td></tr> <tr> <td>국가식품클러스터</td><td></td></tr> </tbody> </table>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3년 100%+2년 50%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3년 50%+2년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3년 100%+2년 50%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3년 50%+2년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0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기업 ○ (대상)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한도 확대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09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79조의7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 범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frac{\sum \text{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간소화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및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신설) 유형별 계산 ○ 해당 과세연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등 별로 계산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 $\sum \frac{\text{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종 전	개 정
〈추 가〉	-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구개발특구 상시근로자 범위) 2026.2.27.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범위) 2026.2.27.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2026.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6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천만원 초과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7천만원 이상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8천만원 이상	□ 총급여액 기준 조정 ○ 8천만원 이상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 공제율 적용		☐ 적용기한 종료		
☐ (공제율)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 7	10 →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반도체	20	20	30	
☐ (적용기한) 2025.12.31.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합리화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 포함 <추 가> ○ (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 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포함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일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 (좌 동) - (좌 동) - 일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합리화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기준) 해당 기간 동안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중 해당 연구개발* 업무 사용시간이 50% 미초과시 다른 목적 전용(轉用) 간주 * 국가전략기술 시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신성장 등 시설 : 신성장 등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 (전용시 추정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과의 차이 ○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신고시)	□ 일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 개선 ○ (좌 동) ○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시간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가. 개정취지

-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공제율 - (기본공제율) 10% (중소 : 15%, 대 : 5%) - (추가공제율*) 10%(중소 :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 (적용기한) 2025.12.31.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중소 : 15%) - (좌 동)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신설

가. 개정취지

-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셜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 15%) ○ (적용기한)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요건) ❶&❷ 또는 ❷&❸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2028.12.31.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가. 개정취지

-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th><th rowspan="2">중견 (3년)</th><th rowspan="2">대 (2년)</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우대*</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r><td>기본</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able>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 기한 연장 ○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 공제액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th><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th><th rowspan="2">중견 (3년)</th><th rowspan="2">대 (2년)</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 rowspan="3">우대*</td><td>1년차</td><td>700</td><td>1,000</td><td>500</td><td>300</td></tr><tr><td>2년차</td><td>1,600</td><td>1,900</td><td>900</td><td>500</td></tr><tr><td>3년차</td><td>1,700</td><td>2,000</td><td>900</td><td>-</td></tr><tr><td rowspan="3">기본</td><td>1년차</td><td>400</td><td>700</td><td>300</td><td rowspan="3">-</td></tr><tr><td>2년차</td><td>900</td><td>1,200</td><td>500</td></tr><tr><td>3년차</td><td>1,000</td><td>1,300</td><td>500</td></tr></table>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025.12.31.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경과조치) 2024.12.31. 또는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가. 개정취지

-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경과조치) 2024.12.31. 또는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frac{\text{연간 총 근로시간}}{\text{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 * $\frac{\sum \text{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연간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규정 인용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계산방법 간소화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 - 상시근로자 등별 * $\sum \frac{\text{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 •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단시간 근로자) 2024.12.31. 또는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④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가. 개정취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 〈단서 신설〉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좌 동)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5.1.1.부터 2025.12.31.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청년으로 간주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가. 개정취지

- 육아휴직 복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요건) ①&② ① 육아휴직자 복직 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6.12.31.

1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 (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신 설〉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 근로자 수 감소시 추정* *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 받은 세액 - 감소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경과조치) 20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8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추징 ○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감면액 추징 요건 강화 ○ (좌 동) - 4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26.2.27. 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 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2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5년 30% ☐ (좌 동)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 /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 / 5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22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8

가. 개정취지

-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신 설〉 ○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 (좌 동) ○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 세액공제 기준금액 <table> <tr> <td>소득세</td><td>2만원</td></tr> <tr> <td>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td>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td></tr> <tr> <td>법인세</td><td>2만원</td></tr> <tr> <td>부가가치세</td><td>1만원</td></tr> <tr> <td>양도소득세(예정신고)</td><td>2만원</td></tr> </table>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 (좌 동) ○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table> <tr> <td>소득세</td><td>1만원</td></tr> <tr> <td>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td>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td></tr> <tr> <td>법인세</td><td>1만원</td></tr> <tr> <td>부가가치세</td><td>5천원</td></tr> <tr> <td>양도소득세(예정신고)</td><td>(좌 동)</td></tr> </table>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3항

가. 개정취지

-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 (완전복귀), 50%(부분복귀) ○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 ○ (좌 동) ○ 부분복귀 범위 합리화 - (좌 동)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6항

가. 개정취지

-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 소득 ☐ 완전복귀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 ☐ 부분복귀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text{국내매출액}}$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산식 추가 } ☐ (좌 동) ☐ 축소완료 전에도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산업부 장관 인정·확인)}}{\text{국내매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정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8항

가. 개정취지

-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정사유 및 추정 금액 ○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추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 (좌 동)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종료

2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5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2026.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27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가. 개정취지

○ 방위산업의 R&D·시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1개 신설 <table border="1">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방위산업</td><td>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td></tr> </table> ※ 1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상향 (미래차 :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14개 분야 186개 시설 〈추 가〉	○ 14개 분야 187개 시설 - 1개 신설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방위산업</td><td>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td></tr> </table>	분야	세부기술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분야	세부기술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28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가. 개정취지

-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 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84개 기술 - 11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11개 <table> <tr> <th>분 야</th><th>세부기술</th></tr> <tr> <td>바이오·헬스(1)</td><td>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td></tr> <tr> <td>에너지·환경(1)</td><td>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td></tr> <tr> <td>융복합소재(1)</td><td>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td></tr> </table>	분 야	세부기술	바이오·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소재(1)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분 야	세부기술								
바이오·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소재(1)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종 전	개 정																	
〈추 가〉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 rowspan="4">첨단 소부장 (4)</td><td>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 강판 제조기술</td></tr> <tr> <td>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td></tr> <tr> <td>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td></tr> <tr> <td>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 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td></tr> <tr> <td rowspan="4">탄소중립 (4)</td><td>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td></tr> <tr> <td>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td></tr> <tr> <td>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td></tr> <tr> <td>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td></tr> </table> ■ (확대) 2개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 rowspan="2">탄소중립 (2)</td><td>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td></tr> <tr> <td>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td></tr> </table>	분야	세부기술	첨단 소부장 (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 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 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탄소중립 (4)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첨단 소부장 (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 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 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탄소중립 (4)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가. 개정취지

- 첨단 전략산업 R&D·시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7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7개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 rowspan="4">인공지능 (5개)</td><td>생성형 인공지능</td></tr> <tr> <td>에이전트 인공지능</td></tr> <tr> <td>학습 및 추론 고도화</td></tr> <tr> <td>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td></tr> <tr> <td rowspan="2">미래형 운송·이동 (2개)</td><td>인간 중심 인공지능</td></tr> <tr> <td>인공지능형 자율운항</td></tr> <tr> <td></td><td>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td></tr> </table>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종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7개 분야* 58개 시설 〈추 가〉	■ (확대) 2개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미래형 운송·이동 (2개)</td><td>주행상황 인지 센서· 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td></tr> </table>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3개 신설 <table> <tr> <th>분야</th><th>사업화시설</th></tr> <tr> <td>인공지능 (1개)</td><td>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td></tr> <tr> <td>미래형 운송·이동 (2개)</td><td>인공지능형 자율운행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td></tr> </table>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 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행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 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행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행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20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가. 개정취지

-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8개 분야* 78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7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⑧인공지능 5개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8개 분야 81개 기술 - 3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3개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head> <tbody> <tr> <td>반도체 (1)</td><td>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td></tr> <tr> <td rowspan="2">미래형 운송·이동 (2)</td><td>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LNG화물창 등)</td></tr> <tr> <td>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td></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종 전	개 정						
	■ (확대) 2개 <table>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r> <td>반도체 (1)</td><td>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td></tr> <tr> <td>수소 (1)</td><td>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td></tr> </table>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수소 (1)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수소 (1)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31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①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②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장부가액의 3% ③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④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해당 자산 시가의 1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

3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 10%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해당 자산 시가의 10% 〈추 가〉 ○ (적용기한) 2028.12.31.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좌 동)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 지원) 10%(협력중견기업* 지원) 5%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이 평균 3천억원 미만인 수탁기업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3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 차익 등 비과세 ○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2028.12.31.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㉓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4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가. 개정취지

-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① 직·간접*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 (적용기한) 2025.12.31.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① (좌 동) ②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5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제12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민간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 민간모펀드의 운용사인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집합투자업자* *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납입자본 20억원 이상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 적용대상 합리화 ○ (좌 동) 〈삭 제〉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제도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6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3조의4

가. 개정취지

-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①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②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 인수 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정비 ☐ ①출자 적용기한 종료 ②인수 2028.12.31.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요건) 직·간접 출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종료

37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 (공제율) 3%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내국법인(대기업 포함) ☐ (좌 등)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7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제3항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비용 ※ 공제대상비용(법 §25의7①(2)) $= \text{a} \times \text{b} / \text{c}$ a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b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c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b) - 영상콘텐츠 제작 인건비, 촬영·조명비 등에서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광고·홍보비 등을 제외한 비용	□ 공제대상 비용 계산시 제작비용 명확화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 $* \text{제작비용} \times \frac{\text{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text{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text{그 외 투자금})}$

3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신설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구축물 및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은 제외 ○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적용기한)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

39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가. 개정취지

-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용) ①내국법인이 ②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③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①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i)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50% 미만*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ii)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50% 이상 처분 (iii)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적용기한)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4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 (산업단지 제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2028.12.31.

4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가. 개정취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4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 12% ○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적용기한) 2025.12.31.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 (좌 동)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44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3항·제100조의27

가. 개정취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가산세 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75조의8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가산세 추가 }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제74조의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5항, 제8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7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 ○ (기업소득 계산 방법) -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 〈추 가〉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70% → 80% - 15% → 30% ○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 - (좌 동)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7년부터 적용) •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종 전	개 정
- (차감항목) 이월결손금, 법령상 의무 적립금* 등 *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보험사 손실보전준비금 등 ○ (환류대상) - (투자) 기계장치 등 자산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 등 - (임금증가)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 - (상생협력 지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추 가〉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 - (좌 동) - (배당)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 *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결산배당) 등 •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0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기금 출연금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5항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금융회사가 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 등 〈추 가〉	□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 ○ (좌 동)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46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가. 개정취지

-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토지 등 처분 후 동종자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대상) 토지, 건축물 - (내용)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추 가〉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전액 익금산입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 유가증권 등 처분 후 동종자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대체취득 자산 양도 후 새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취득 사용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계속 적용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국내투자형 펀드 등 - (내용)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사유 추가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체취득자산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금지 위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4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요건 및 공제율) - (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지출 운송비용이 40% 이상 +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지출 운송비용의 1%+ 전년대비 증가액의 3% 〈신 설〉 ○ (적용기한) 2025.12.31.	□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기본공제 요건 및 공제율)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이 40% 이상 ※ 전년대비 증가요건은 삭제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지출 운송비용의 0.5% ○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율) - (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원양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지출 원양 운송비용의 1% - (적용 범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가. 개정취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 ❶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❷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간 연장 ○ (좌 동) ○ 2028.12.31.

49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가. 개정취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재편 계획 ○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026.12.31.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 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대상 조정 ○ (좌 동)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0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① 문화비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② 전통시장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①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②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 제외 〈신 설〉 ○ (적용기한) 2025.12.31.	□ 특례대상·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① (좌 동) 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①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추가 지출증명서류 대통령령으로 위임) ②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 범위) -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 *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주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혜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 재 화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효 동

문의사항



(044) 204-3142~5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0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339
02.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40

0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가. 개정취지

- 가업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장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적용* 한도 *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 + 상장에 따른 이익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울과세) - 적용세율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100억원	□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 가업영위기간별 한도 -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02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내용) 증여세 100% 감면 (5년간 1억원 한도)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문의사항



(044) 204-3117~21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0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정사유 합리화	343
①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정사유 합리화	343
②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4
0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5
03.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6
04.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7
05.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8
06.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9
07.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0
0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1
0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52
1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353
11.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등 제도개선	354
1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부담 완화	356
13.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357

0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적용대상) 농·어민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구입 ○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 가산세(10%)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적용기한) 2025.12.31.	□ 추징사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농민 또는 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202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②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연장 } ☐ (좌 등)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0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03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 개정취지

- 필수 주거 서비스 비용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면제대상) ❶ 또는 ❷ ❶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❷ ❶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2028.12.31.

04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5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3

가. 개정취지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기숙사의 운영권·기숙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 20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 사립 민자(BTO) 기숙사 ■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 2015.1.1.~20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20.1.1. 이후 공급받는 운영권 및 제공하는 기숙용역	□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2015.1.1.~2028.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 행복기숙사(사립·연합)

06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버스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8.12.31.

07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 연료 ☐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6.12.31.

0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26.12.31.

0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가. 개정취지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2028.12.31.

1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가. 개정취지

-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종료 ☐ (좌 동)

11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등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 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 가액 ○ (공제율) 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 :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 설〉 〈신 설〉 ○ (적용기한) 2025.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제도개선 } ○ (좌 동) - 중고차 :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 (이월공제) 중고차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 - 중복 시 이월분 우선적용 ○ 2028.12.31.

종 전	개 정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 취득가액 〈추 가〉	☐ 필수 기재사항 추가 ☐ (좌 동)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부담 완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 등이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세금계산서 ☐ 농어민등확인서* *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	☐ 첨부서류 제출 부담 완화] ○ (좌 동) ☐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6

가. 개정취지

-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 농업용 로더, 버섯재배용기, 수산물 건조기 등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및 어업용 고압세척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2.27.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주세 분야)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문의사항



(044) 204-3117~21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주세 분야)

0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61
0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362

0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가. 개정취지

- 연안화물선 유류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6.12.31.

0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가. 개정취지

- 주류 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 (대상) ❶~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❶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❷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❸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다. 시행시기

- 2026.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6년 개정세법 해설

기타세법

집필진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 등]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증권거래세법]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정수 외 3명

[조세범 처벌절차법]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외 2명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전준희 외 4명

문의사항

(044) 204-3112~4

(044) 204-3117~21

(044) 204-3127~31

(044) 204-3137~40



차례 / 기타세법

개별소비세법

- 0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365
- 02.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366

주세법

- 0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367
- 0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368

증권거래세법

- 01. 증권거래세율 환원 369

조세범 처벌절차법

- 01. 무면허 주류 중개·수출입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370

교육세법

- 01. 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율 인상 371
- 0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372
- 03.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 373
- 04.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 374

농어촌특별세법

-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375
- 02.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 376

개별소비세법

0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가. 개정취지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의 시행일 ('26.4.24.)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24.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①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②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추 가〉 ③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④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②의 경우) 환입확인서 〈추 가〉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 공제·환급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 (좌 동)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 (제조장 미반입 폐기시) 폐기사실 확인서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0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0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주류 규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추 가〉	☐ 첨가 재료 추가 ☐ (좌 동) ☐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01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❶ (코스피) 0%(농특세 0.15%) ❷ (코스닥·K-OTC) 0.15% (농특세 없음) ❸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❶ 0.05%(농특세 0.15%) ❷ 0.20%(농특세 없음) 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범 처벌절차법

01

무면허 주류 중개·수출입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가. 개정취지

- 무면허 주류 중개·수출입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무면허 제조·판매*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 「조세범 처벌법」 §6의 범칙 행위 ❶ 무면허로 주류(밀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 - 주종 및 제조·판매 용량에 따라 50만~3천만원 ❷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 - ❶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❸ 무면허로 주류 소매 - ❶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주류 무면허 수출입·중개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 상당액 규정 ❶ 무면허로 주류(밀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수출·중개 - (좌 동) ❷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수출입·중개 - (좌 동) ❸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 2026.2.27.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01 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교육세 과세대상 보험료 공제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교육세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과세표준) 주세액 ○ (세율) - (원칙) 10% - (예외) 30% • 맥주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03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채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손익통산 불가) ○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추 가〉	□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 (좌 동) ○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4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가액 ○ 자산·부채 평가 또는 수익·비용 귀속 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추 가〉	☐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 (좌 동)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수수료 * (은행)햇살론유스, (카드)햇살론카드, (저축은행)햇살론 일반보증 등
☐ 여신전문금융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추 가〉	☐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 ○ (좌 동) ○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 대금을 감액 청구시 해당 할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종합저축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등 <추 가>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 ☐ (좌 동) ☐ 청년미래적금

02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부유예 규정 신설 ○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인쇄 2026년 4월
발행 2026년 4월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규과
(☎ 044-204-3103)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